

『구미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노인종합 복지회관 경로식당 이용료를 현실화하여 급식의 질을 높이고 식당 운영을 원활하게 하며
- 이용 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시설의 설치근거를 구체적으로 명기함.(안 제1조)
 - 노인복지법 제4조 → 제4조 및 제37조
- 경로식당 이용료 조정(안 별표 1)
 - 2,300원 → 2,500원
- 이용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.(안 제6조)
 - 구미시에 거주하는 → 구미시에 주소를 둔

4. 참고사항

- 「노인복지법」 제4조, 제37조
- 「주민등록법」 제6조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노인종합복지회관 내 경로식당 이용료를 현실화하여 급식의 질을 높이고 식당 운영을 원활하게 하며, 이용 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

○ 주요 내용으로는

- 시설의 설치근거를 구체적으로 명기하고(안 제1조), 경로식당 이용료를 현행 2,300원에서 2,500으로 조정(안 별표1)하며, 이용 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임.

○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

노인종합복지회관 경로식당 이용료를 현실화하여 급식의 질을 한단계 높이고 시설 이용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복지회관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가 개정되면 노인의 권익 신장과 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.

【 관 계 법 령 】

□ 「노인복지법」

제4조(보건복지증진의 책임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,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**제2조**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37조(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·기능별 특성을 갖춘 표준 모델 및 프로그램을 개발·보급하여야 한다.

④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,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**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** <개정 1999.2.8. , 2008.2.29. , 2010.1.18. , 2011.6.7. >

□ 「주민등록법」

제6조 (대상자)

①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(이하 "거주지"라 한다)를 가진 자(이하 "주민"이라 한다)를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. 다만,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.

② 제1항의 등록에서 영내(營內)에 기거하는 군인은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에서 본인이나 세대주의 신고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.

③ 「해외이주법」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이주를 포기한 후가 아니면 등록할 수 없다.